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79 발의연월일 : 2025. 4. 23.

발 의 자:김기표·신영대·문진석

위성곤 • 이인영 • 조계원

이학영 · 강득구 · 이재강
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이유

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.

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.

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. OECD도 2025년 3월 '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: 저출산 추세의 이해'(Korea's Unborn Future: Understanding Low Fertility Trends)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, 실제,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% 상승하면,

이듬해 출산율은 0.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 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6조의5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6조의5(출산・양육을 위한 주	제36조의5(출산・양육을 위한 주		
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	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		
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	① 2030년 12월 31일		
를 출산한 부모(미혼모 또는			
미혼부를 포함한다)가 해당 자			
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			
산일부터 5년 이내에 「지방세			
법」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			
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			
택을 취득하는 경우(출산일 전			
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			
우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			
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			
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			
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			
제하고,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			
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			
을 공제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